

---

## 第 6 章

# 2000年度 議會運營

第1節	第72回	臨時會
第2節	第73回	臨時會
第3節	第74回	臨時會
第4節	第75回	第1次定例會
第5節	第76回	臨時會
第6節	第77回	臨時會
第7節	第78回	臨時會
第8節	第79回	臨時會
第9節	第80回	臨時會
第10節	第81回	第2次定例會

# 第 6 章 2000年度 議會運營

## 第1節 第72回 臨時會

제72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우봉명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2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7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1. 26 (수) 10:00	1	개 회 식	
		1. 제7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정에관한보고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1. 27(목) 10:00	2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 28(금) 10:00	3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농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 29(토) 10:00	4	1. 조례안및일반안전처리	

## 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형직의원, 우봉명 의원이 선출되었다.

## 다. 군정에 관한 보고

2000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보고(계속)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3. 第3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보고(계속)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농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보고되었다.

## 4. 第4次 本會議

### 가. 청양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 18                      ○ 제출자 : 김형직의원의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개정 위임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월 3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6조”를 “제4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 18

○ 제출자 : 김형직의원외 9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 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월 3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정활동비·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회기수당의 지급을 제16조제2항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청양군의회 회의(위원회 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회기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회기수당 지급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350,000원”을 “500,000원”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7조1항관련)의 지급기준란 및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2항관련)의 구분란중 “일비(1일당)”를 “현지교통비(1일당)”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 18
- 제출자 : 김형직의원의 9인
-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월 3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2節 第73回 臨時會

제73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윤재순의원의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3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7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3.21 (화) 10:00	1	개 회 식	
		1. 제7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주요사업장답사)	
3.22~3.23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주요사업장 답 사
3. 24 (금)	2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25 (토)	3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자치행정과, 재무과)	
3. 26 (일)		공 휴 일	
3. 27 (월)	4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3. 28 (화)	5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보건의료원,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3.29~3.31		휴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4. 1 (토)	6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	

#### 나. 주요사업장답사의견

2000년도 시행되고 있는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촉구하며, 군민의 여론수렴등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으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군내 19개 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기로 의결하였다.

## 다. 휴회의건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휴회기로 하였다.

##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이 선출되었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질문

군정에 관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윤명희의원외 7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1. 청양소식지가 군행정을 전군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지나친 행정홍보만을 고집하는 관계로 일반 군민의 기고등 군정에 대한 조언이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존재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계획과 군민 참여방안은?	윤명희의원
	2. 2000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국·도비에 대한 삭감 또는 증액내역과 일반운영비의 실·과간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균형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3. '99년 청양문화원에 대한 국·도·군비 지원내역(목별분류)과 총 수지현황은?	윤명희의원
	4. 청양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중인 각종 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유와 개선대책은?	
	5. 칠갑산 맑은물의 판매대리점 현황과 대리점별 '96. 6. 29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실적과 판매촉진을 위한 향후 대책은?	김형직의원
	6.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그동안 많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난해 우리군의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규제개혁 실천 건수는?	우봉명의원
	7.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천우길의원
기획감사실 (건설도시과)	8.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유치 및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지천댐 설치 문제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지천댐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유성종의원
	9.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10. 민선자치 2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읍·면별로 분석하고 미완료된 사항과 실현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박상진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11.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중 이월사업 현황과 사유를 분석하고 군재정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또는 도단위 군정현안사항 설명회 개최 계획과 '99년도 이로인한 실제적 예산 확보한 내역은?	박상진의원
기획감사실 (공통)	1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박호신의원
	13. 신문보도에 의하면 1999년도 각 시·군 행정평가에서 청양군이 도내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는데 그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종합민원실	1. 자동차 신규등록 및 폐차현황과 자동차 등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종섭의원
	2.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천우길의원
	3.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읍·면별 배정실적(최근 3년간)과 금년도 읍·면별 신청현황, 배정계획 및 빈집 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99년도 불법건축물 현황(처리건수, 미처리건수 포함)은?	
	4.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에 따른 주민피해보상제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박상진의원
환경보호과	1.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따른 특별한 개발대책과 정화조 설치에 있어 대치면 일부와 운곡면 일부를 배제하고 청양읍 백천리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만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명희의원
	2.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미설치된 읍·면에 대한 쓰레기 처리실태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김형직의원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환경보호과	3. 정산지방상수도 급수 및 정수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확보방안등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앞으로 급수인구 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김형직의원
	4.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군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우봉명의원
	5.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대책은 무엇인가	
	6.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98~'99)과 종량제 정착화를 위한 개선·보완계획은 무엇이며 봉투가격 상승조정에 따른 주민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은?	윤재순의원
	7. 주민에 대한 맑은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군내 간이상수도 현황과 시설 노후 및 훼손에 따른 보수계획 및 앞으로 선량한 관리방안은?	천우길의원
	8. 현재 군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보류하고 청양읍 매립장을 보강하여 사용키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정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유성종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환경보호과	9. 농공단지 휴·폐업 업소내 산업폐기물 방치현황 및 처리대책과 계획은?	박상진의원
	10. 청양상수도 관리현황과 누수 방지대책은?	박효신의원
	5.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대책은 무엇인가	

### 3. 第3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군정에 관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윤명희의원의 9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자치행정과	1.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흡하여 화재발생시 출동의욕이 저하되고 있는데 위험수당 지급등 사기양양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윤명희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읍·면 6급직원에게 대한 군청 전입시험제 도입 용의는?	”
	3.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생활민원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종섭의원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자치행정과	4. 읍·면별 남·여 공무원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균형있게 배치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김형직의원
	5. 21세기 지식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정예화된 전문인력 육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봉명의원
	6. 현장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봉사의 날 운영은 주민의 큰 호응속에 좋은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부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윤재순의원
	7. 구봉광산 광해복구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축구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및 군에서 관심을 기울여 협조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유성종의원
	8. 청양군 공설운동장 매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박상진의원
	9. 연초 업무보고시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일반직 17명을 감축하고 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기능전환 대상 읍·면은 어디인지 밝혀주기 바람.	
	10. 8. 민간·사회단체등과 연계하여 범군민적 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이 기대했던 것 보다 추진이 미흡하고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성과 및 개선대책 등 추진계획은?	박효신의원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재 무 과	1. 관용차량별 수리비 내역과 내구년한 경과 차량 중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계속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윤명희의원
	2. 군발주 사업중 각종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및 준비로 보수한 실적은	김형직의원
	3. '99년도 군발주 사업중 지체상금 부과내역과 관내 건설업체중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은?	
	4. 군청버스를 대형으로 구입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처리대책은?	우봉명의원
	5. 2000년 2월말 현재 체납세금 현황과 체납된 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 및 그동안 결손처리 실적과 향후 계획은?	
	6. 군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증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윤재순의원
	7. 군유 잡종재산중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과 미대부하고 있는 재산내역 및 '99년도 군유재산 매각실적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8. 군유재산중 각종 건축물에 대한 무상 및 유상임대한 내역과 근거는?	유성종의원
	9. 군재정확보를 위하여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세원발굴실적(구체적 사례)과 세외수입 증대 실적(항목별 구체적인 내역)은?	
	10.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군청 각 담당들이 읍·면 분담을 지정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체납액 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처분을 관련법령에 의해 압류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압류한 현황('98, '99)과 조치계획은?	박상진의원

## 4. 第4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질문(계속)

군정에 관한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윤명희의원의 7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사회복지과	1. 군내 경로당에 대한 '99년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현황 및 금년도 지원계획, 문제점과 대책은?	이종섭의원
	2.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을 밝혀주고 장애상태가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자는 없는가?	우봉명의원
	3. 취학전 아동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은?	천우길의원
	4.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질높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군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재원확보방안등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유성종의원
	5.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하자보수현황과 묘역 및 납골당 시설보강·편의시설등 3차공사 개요와 운용조례 제정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은?	박상진의원
	6. 군내 각 시설물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한바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박효신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림과	1. 우리군의 특산품인 청양고추가 타지역인 경남 밀양시에서도 청양고추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등 전국에서 청양고추의 명성이 높는데 금년도 청양고추의 재배면적과 앞으로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윤명희의원
	2. 특색있는 아름다운 칠갑산을 가꾸고 관광지 주변에 뱃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이종섭의원
	3.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개설 현황 및 금년도 계획은?	
	4. 특색있는 유망작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읍·면 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은?	
	5. 정산면 학암리에 소재할 종축장 이전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김형직의원
	6.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맞이하여 준비태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청양, 정산 산불진화용 차량 출동횟수(위치등 구체적으로) 및 공휴일 운전기사 근무실태는?(근무일지 사본 제출)	우봉명의원
	7.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농업인력(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산업기능요원)육성 실적(현재까지 누계인원)과 관리현황을 밝혀주기 바람.	
	8. 육림사업 연도별('97~'98) 지원현황과 향후 육림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람.	윤재순의원
	9.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예방활동과 함께 초동진화태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 현황과 진화 대책은?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림과	10. 영농회사 운영현황과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유성종의원
	11. 청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고추축제의 구체적인 개최내용과 계획은?	박상진의원
	12. 산림훼손 허가·신고현황과 복구비 예치현황(광해복구지 포함) 및 조치상황은?	박효신의원
지역경제과	1.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군내 주유소의 유가(특히 휘발유)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인바 유가인하 조정 방안등 대책은 없는지?	윤명희의원
	2. 청양시장내 소방도로를 점유하여 화재발생시 진압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종섭의원
	3. 도시미관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처리대책은?	김형직의원
	4.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활동실적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우봉명의원
	5.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비봉, 화성, 운곡 단지별)	
	6.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기업체 유치계획은?	천우길의원
	7. 국도변 도립공원내 고급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적극적인 조성계획을 추진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유성종의원
	8. 청양시장내 장옥 소방안전 점검 실적과 조치상황 및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0년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9인을 선임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다. 휴회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회키로 하였다.

라. 군정에 관한질문(계속)

군정에 관한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윤명희의원의 8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건설도시과	1. 3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과 설계변경시 주민 여론수렴 여부 및 구체적인 여론수렴 사례는 ?	윤명희의원
	2.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농번기 이전 완료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종섭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건설도시과	3.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과 문제점은?	이종섭의원
	4. 칠갑산 도립공원의 면적과 그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앞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휴식처가 될 칠갑산 도립공원개발 방향과 군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김형직의원
	5. 읍·면별 재해위험시설 관리현황 및 개·보수 계획은?	천우길의원
	6.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도 등에 대한 선형개량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군도선형개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성종의원
	7. 농업용수 확보·공급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현황과 소류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관리실태는?	박효신의원
보건의료원	1. 청양의료원의 공중보건의를 대한 군민여론이 안 좋아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근무불성실한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치계획과 교체용의는 없는지	윤명희의원
	2. 오지부락 검진을 위하여 이동검진차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보계획과 앞으로 이동검진 대책 및 읍·면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김형직의원
	3.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확대 실시방안은?	우봉명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보건의료원	4. 보건의료원 진료과목별 '99년도 및 2000년도 월별 진료실적과 입원실 이용현황은?	우봉명의원
	5. 현재 보건의료원을 신축중에 있는데 준공후 시설 활용계획 및 시설확충에 따른 인력·장비등 부족에 의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윤재순의원
	6. 오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을순회진료 '99년도 추진실적 과 문제점 및 대책은?	천우길의원
	7.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의료 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의료진의 역할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책임감 있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이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박상진의원
농업기술센터	1. 경쟁력있는 우량품종 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조직배양실의 그동안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운영계획은?	이종섭의원
	2. 농가에 대한 새기술 보급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시범포 운영실적('98, '99)과 금년도 운영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윤재순의원
	3. 고품질 과·채소 생산에 대한 지원방안 및 영농 지도계획과 판로망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천우길의원
	4. 양질의 버섯 종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균배양소 설치 추진상황은?	박상진의원

##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견

위원장 직무대행인 윤재순위원의 진행으로 천우길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견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윤명희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였다.

#### (4)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이에따른 질의·토론이 있었다.

###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다.

##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이어 2000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하였다.

## 7. 第6次 本會議

### 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회부일 : 2000. 3. 28                      ○ 심사보고일 : 2000. 4. 1
- 처리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천우길 예결특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4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나.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3. 22                      ○ 제 출 자 : 천우길의원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의회 정례회의 집회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4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3.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 청양군의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집단민원의 차원이 아닌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행정 참여 의식의 함양과 청양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금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군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른 최소 인원수를 조례로써 확정하여 청양군행정의 청양군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4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인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라 함은 500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3. 17.                      ○ 제 출 자 : 청양군수

### ○ 제안이유

현행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용어등을 일치시키고, '99 규제업무 정비 계획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4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①군수는 청소대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 1회이상 청소의무 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하고, “분뇨관련영업자”를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중 “별표2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2호 내지 제11호,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중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27조제1항1호중 “제17조”를 “시행규칙 제35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용료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 및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제1항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별표3과”를 “별표2와”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수료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분뇨관련영업자가 대행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8의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별표1] 을 삭제하고, [별표2] 내지 [별표4] 를 [별표1] 내지 [별표3] 으로 하며,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4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바. 구룡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의견**

○ 제출년월일 : 2000. 3. 17.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구룡광산 오염(광해) 방지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의 그 목적이 완료되었기 용도폐지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하려는 것임.

◆구룡광산오염방지사업부지용도폐지목록◆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당초		변경	
	면	리	지번			재산의종류	관리부서	재산의종류	관리부서
계					80,172				
1	남양	구룡	436	잡종지	4,279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2	남양	구룡	444	잡종지	27,522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3	남양	구룡	455	잡종지	6,017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4	남양	구룡	434-4	잡종지	66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5	남양	구룡	440-7	잡종지	1,497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6	남양	구룡	440-9	잡종지	873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7	남양	구룡	산51-3	임야	12,496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농림과
8	남양	구룡	산52-5	임야	8,451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농림과
9	남양	구룡	산52-6	임야	317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농림과
10	남양	신왕	3	잡종지	14,291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재무과
11	남양	신왕	산4-4	임야	4,399	행정재산	환경보호과	잡종재산	농림과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4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第3節 第74回 臨時會

제74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천우길의원의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4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7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5. 12 (금) 10:00	1	개 회 식	
		1. 제7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주요사업장답사)	
5. 13(토) 10:00	2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5. 14(일)		공 휴 일	일요일
5. 15(월)	3	1. 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	



##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5.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과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증 일부 부합되지 않는 용어등을 정비하고 대불금 상환기간 및 결손처분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써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 본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하고 동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분임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5. 9.                      ○ 제출자 : 이종섭의원외 7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용어인 “일비”가 불합리하여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지급기준을 정비하여 보상심의회 의원 일부와 간사,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기준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폐질등급에 따라 심의·결정한 금액
3.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6호제1항제2호중 “작성한”을 “지정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결정”을 “심의”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선임위원수 : 3명

- 선임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지방자치법 제56조)

-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선임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청 양 군 의 회	의 원	김 형 직	대 표 위 원
청양읍 교월리	-	최 병 락	전직 공무원
남양면 금정리	-	최 명 규	전직 공무원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결산검사위원에 김형직의원, 전직 공무원 최병락, 최명규씨 등 이상 3명이 선임되었다.

**마.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5.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전 제6항)중 “제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중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 ”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바.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5.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통합방위법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청양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1. 청양군의회의장
2. 육군 제8361부대 4대대장
3. 청양경찰서장
4. 청양교육장
5. 당해지역 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인
6. 국가 정보원 관계자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 기획감사실장
3. 작전담당 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4. 경찰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제3조(협의회 심사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 1. 군 지원본부

-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 나. 상황실은 실과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2. 읍·면 지원본부

-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총무담당인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7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라. 분야별 지원반의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
  - 가. 10년생 이상의 임목
  -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5.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21C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보화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코자 하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1995년 정부가 국가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됨에 따라 청양군의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구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실과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 제 2 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사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이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

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 3 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군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의 장이 된다.

④협의회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설치)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사업

제17조(시설장비)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 제18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6 조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 제21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①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 제 7 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 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군수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 8 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①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군수는 청양군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 9 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방향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을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시설·장비 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4.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전자계산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2항중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 또는 구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중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에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의2 주 행 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672만원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6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자.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5.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

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하고,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로 하며,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3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차.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 제출년월일 : 2000. 5.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청양읍 벽천리, 송방리, 학당리 일부가 '99. 4. 21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추가 지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청양읍 벽천리, 송방리, 학당리 일부 추가지정(지정면적 0.585km<sup>2</sup>)
  - 변경내역 : 585,000m<sup>2</sup>
    - 일반주거지역 : 67,660m<sup>2</sup>

- 준주거지역 : 32,300m<sup>2</sup>
- 준공업지역 : △39,800m<sup>2</sup>
- 자연녹지지역 : 492,440m<sup>2</sup>
- 생산녹지지역 : 32,400m<sup>2</sup>
- 청양읍 도시계획지역 : 2.860km<sup>2</sup> → 3.445km<sup>2</sup>
- 정산면 도시계획지역 : 2.371km<sup>2</sup>
- 청양군 전체 도시계획지역 : 5.816km<sup>2</sup>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5월 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第4節 第75回 第1次 定例會

제75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5회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75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75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0. 6. 21 (수) 10:00	1	개 회 식 1. 제75회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탁·숙박시설등의설치에 관한조례안 6. 청양군농지개량조합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6.22~6.24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3일간
6. 25(일)		공 휴 일	
6. 26(월) 10:00	2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5.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6. 청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8.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10.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 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7~ 6. 28		휴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간
6. 29(목)	3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30(금)	4	1. 제3대청양군의회후반기의장·부의장선거	

## 나. 주요사업장답사의견

2000년도 시행되고 있는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촉구하며, 군민의 여론수렴등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으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내 14개 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키로 의결하였다.

## 다. 휴회의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회키로 하였다.

##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제7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이 선출되었다.

## 마.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2000.2.9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2000.5.4 신설)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위락·숙박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에 한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
3. "위락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
4.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한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 등) ①준농림 지역내에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지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 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가 설치·운영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 바. 청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농지개량사업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하여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조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등급차등의 사전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등급차등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농지개량”을

“농업기반정비”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 결정하되 동리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를 “수혜자총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중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를 “감보율(중전토지의 지적에 비례)을 적용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분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약서에서 정하여야 한다”를 “징수 및 교부는 환지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중 “지분 및 징수는”을 “징수 및 교부는”으로 하고 “환지인가고시 후”를 “환지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로 한다.

제11조중 “법제5조”를 “법제11조”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하며, “10일이내에”를 “환지확정측량완료일 이전까지”로 하고, (가옥, 기타 건축물 포함)을 삭제하며,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림부로 부처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 1. 1일부터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어 해당 명칭을 변경코자 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청양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로 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한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95조”를 “청산에 관여하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및 제9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 제출년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99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과 목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사유
세항	세세항	목							
합 계			10건	115,208	113,726	48,236	65,490	1,482	
재해 대책	보조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승주소하천수해복구	9,800	9,800	9,800	0	0	태풍“올가” 재해복구사업
			덕성새마을창고보수	18,900	17,948	17,948	0	952	”
			비봉농공단지보수	4,000	4,000	0	4,000	0	”
		민간자본 보조	표고재배사 시설복구	1,889	1,889	987	902	0	”
			비닐하우스복구	61,840	61,840	5,452	56,388	0	”
			농작물복구	2,673	2,143	2,143	0	530	”
			가축입식	281	281	281	0	0	”
			수산물입식	4,200	4,200	0	4,200	0	”
			주택수해복구	2,025	2,025	2,025	0	0	”
		자산 취득비	파이프정형기구입	9,600	9,600	9,600	0	0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심사를 위하여 2000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 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출연월일 : 2000. 6.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승인받고자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함께 2000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1999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회부하고 6월 29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 ◆ 선 임 위 원 명 단 ◆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 라. 휴회의건

19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회기로 하였다.

#### 마.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6. 7.                      ○ 제출자 : 김형직의원외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으나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전문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청양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매월 청양군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

②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등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회기수당 지급)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5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

제6조(출석일수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7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9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청양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바. 청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향후 집중되는 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양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운용하되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청양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청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서로 돕는 진정한 이웃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질 높은 봉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주민의 공공 복지증진 혜택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 참여와 질 높은 봉사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주민의 공동복지증진 혜택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의 모집과 봉사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분야 및 내용) 자원봉사의 주요활동 분야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분야 : 경로당, 노인학교, 독거노인,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세대돕기, 장애인돕기, 학습지도상담, 이미용봉사, 목욕보조빨래, 가전제품 수리, 결연지원, 집수리, 물리치료보조, 장학금지급, 난민 구호, 요리급식 서비스, 교도소교환활동, 기타사회복지시설위문 및 봉사 등
2. 지역사회 개발분야 : 주민토론회, 이웃사랑방증게실, 자율방법활동, 공원마을안길청소, 농촌봉사활동, 수해복구지원, 주민자활지원, 인명 구조 활동, 긴급구호활동, 우범지역순찰 등
3. 환경보전 분야 : 자연보호활동, 공공장소청소, 폐비닐수거, 쓰레기수거, 벽보제거, 황소개구리잡기, 농약병수거, 주변환경정비, 산불예방, 야생조수보호, 약수터관리, 공해방지감시, 산림보호, 꽃길조성, 유해환경퇴치, 오물투기단속 등
4. 의료보건 분야 : 의료상담, 진료봉사, 방역활동, 간병, 질병조사, 백혈병어린이후원, 헌혈운동, 사랑의장기 기증운동, 농촌의료봉사 등
5. 문화관광체육분야 : 통역, 사무지원, 관광안내, 통신문화, 행사진행보조, 지역사회음악회, 문화시설안내, 전시회개최, 체전도우미 체육시설 관리, 경기장질서안내, 자원봉사대축제 참여 등
6. 캠페인 분야 : 거리질서, 교통, 인권캠페인, 범죄예방, 마약추방, 윤리도덕, 절약캠페인, 소비자보호운동캠페인, 부정선거추방캠페인 등
7. 공공사무보조 분야 : 공공기관사무보조, 도서관사무보조, 공공시설 주차안내, 공공기관민원안내 등
8. 교육분야 : 야간학교운영, 성교육상담, 학습지도, 컴퓨터교육, 청소년 캠프, 취미교실, 기술교육강좌, 주부교실, 영농교육 등
9. 교통분야 :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불법주정차계도, 교통질서 위반 시민 감시 등
10. 아동청소년보호 : 소년소녀가장돕기, 청소년비행상담, 아동복지시설 위문, 불우청소년결연, 어린이학습지도, 결손가정아동지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선도 등

11. 장애인 돕기 : 장애인복지시설위문, 장애인취업알선,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목욕보조, 장애아동돌보기, 장애인밥먹여주기 등
12. 공공사업분야 : 주민숙원사업, 공공시설사업, 하천제방도로관리, 주민불편생활민원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등

제4조(모집 및 위촉) ①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자원봉사자나 봉사단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가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에 등재 한다.

제5조(공공사업위탁) ①군수는 주민숙원사업 또는 생활불편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연계된 봉사단체에게 보조금의 교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교부시에는 영리적이윤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재료비 등 기본경비만을 교부해야 한다.

③봉사단체에게 위탁 시행하는 사업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확인토록 하고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배치) 군수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 파악하고 월별 활동계획을 수립, 자원봉사자나 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 ①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는 읍·면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는 별표1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군수는 포상 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가 수혜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수혜를 받도록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자원봉사자나 봉사단체가 운영규정을 위배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등) ①군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에 필요한 재료비등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 원 봉 사 자 수 칙

1. 인간은 인종, 종교, 직업, 연령, 이념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있다는 철학을 갖는다.
2. 인간은 모두 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명심한다.
3. 인간 모두는 나에게 필요하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
4.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공생공존의 삶을 영위하여 사랑, 평화, 행복을 추구하는 겨레의 기수란 신념을 갖는다.
5.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은혜를 베푼다는 자선 사업적 개념을 초월하고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6.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전인적 인간화와 공동복지 혜택 실현을 이웃과 더불어 발전시킨다.
7.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 수용적 자세로 임한다.
8.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수혜자의 비밀을 준수하고 물질적인 대가나 재산상의 수익을 절대 금한다.

## 아.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일부조항중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기금조성”을 “기금의 설치”로 한다.

제1조중 “청양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를 “청양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의 운용수입금

제4조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심의를 받아 정하여야 한다”를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중 “심의결정”을 “심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위원의”를 “위촉위원이”로 하고, “재임명 또는 위촉된”을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13조중 “예산범위”를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로 한다.

제14조 제목 “회계공무원”을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1999. 8. 10)과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4.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자금을 조성”을 “자금을 확보”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제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출연)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중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지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군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청양군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3.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4. 자동차 및 건설기계수리업
5. 기타(기금의 재원 및 산업분포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업종)

제8조중 “군수는”을 “군수가”로 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장 제목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용자”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운용관리”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중 “현지실사 및 신청서류 검토후”를 “현지실사를 거친후”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하며, “용자대상 사업체의 용자금액”을 “용자대상 사업체 및 용자금액”으로 하다.

제12조중 “지원한도책”을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군수는 제1항의 대출(용자)금리중 3%내외의 금리를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을 “용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제4항 제2호중 “재무과장, 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내지 제6호”를 “제3호내지 제5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중 “제4항 제7호에 의한”을 “위원회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어도 별도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6항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6조중 “공업가스계장”을 “공업가스담당주사”로 하며, 동조 단서중 “제5조에”를 “제5조의 규정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차.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6. 1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그동안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 3,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 무상수리하여 주었으나, '99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0,000원 미만인 부품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0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을 1,000원 미만을 절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5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3,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1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과 제1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각각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견

위원장 직무대행인 윤재순위원의 진행으로 윤명희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견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천우길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였다.

#####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었다.

##### (5)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었다.

### 4. 第3次 本會議

#### 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 예결특위 회부일 : 2000. 6. 26.      ○ 심사보고일 : 2000. 6. 29.

##### ○ 처리결과

19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견에 대하여 윤명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예결특위 회부일 : 2000. 6. 26.      ○ 심사보고일 : 2000. 6. 29.
- 처리결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윤명희 예결특위 위원  
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6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단위:천원)

회계별구분	구분	예산현액 ①	결산		
			세입②	세출③	이월액④ (B/C)
계		120,723,441	115,831,811	92,539,872	23,291,939
일반회계		96,035,703	97,680,287	76,702,986	20,977,301
특별회계		24,687,738	18,151,524	15,836,886	2,314,638
	상수도사업	1,666,607	1,701,236	1,535,816	165,420
	주택사업	247,348	263,598	245,522	18,076
	새마을소득사업	277,902	269,051	204,664	64,38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30,602	146,387	130,000	16,387
	농공단지조성	14,691,125	9,046,858	7,245,461	1,801,397
	하천골재판매사업	2,925,196	2,331,134	2,291,371	39,763
	지역개발사업	2,194,152	1,872,968	1,731,409	141,559
	주차장운영	148,578	118,323	57,602	60,721
	의료보호사업	2,406,228	2,401,969	2,395,041	6,928

## 5. 第4次 本會議

### 가. 의장·부의장선거

#### ○ 의장선거

제3대 전반기 김현백 의장의 사회로 무기명 투표에 의거 의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윤재순 의원 6표, 김현백의원 4표로 윤재순의원이 제3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 부의장선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선거도 의장선출시와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에 의거 실시한 결과 유성종의원 7표, 윤명희의원 1표, 천우길의원 1표, 김현백의원 1표로 유성종의원이 제3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 第5節 第76回 臨時會

제76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박상진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견

제76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1일 1일간 운영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7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7. 11 (화) 11:00	1	개 회 식 (의장단 이 · 취임식)  1. 제7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 5.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6. 청양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형직의원, 우봉명 의원이 선출되었다.

다.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 18
- 제출자 : 김형직의원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16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회계 용어를 개정하고 청양군 직제에 따라 “청·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변경하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은 소모품에 한하고, 이란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계상 구입토록 하여, 무분별한 물품구입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7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관서당경비”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제목을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제1항·제33조중 “청·소”를 각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관련법(농업·농촌기본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변경 설치토록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7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해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7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바. 청양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측량법시행령의 개정('99. 2. 8 대통령령 제161114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실비변상 규정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7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1”을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과장이 된다”를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7조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6節 第77回 臨時會

제77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박효신의원의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7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7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7. 26 (수) 10:00	1	개 회 식 1. 제7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7. 27(목)	2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7. 28(금)	3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7. 29(토)	4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건설도시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30(일)		공 휴 일	일요일
7. 31(월)	5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 조례안및일반안건	

#### 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천우길의원, 박상진의원이 선출되었다.

#### 다. 군정에관한보고

2000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이 보고되었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3. 第3次 本會議

####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4. 第4次 本會議

###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건설도시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5. 第5次 本會議

###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 센터 소관이 보고되었다.

### 나.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2000. 7. 18.                      ○ 제출자 : 천우길의원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00. 7. 1)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기타 일부조문의 내용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7월 3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중 “7월·8월”을 “9월·10월”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7節 第78回 臨時會

제78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박상진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8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7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8. 28 (월) 10:00	1	개 회 식  1. 제7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29(화)	2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8. 30(수)	3	1. 주요사업장답사의건 2. 휴회의건 3.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사회복지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8. 31~9. 2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9. 3(일)		공 휴 일	일요일
9. 4(월)	4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2. 조례안 및 일반안건	

## 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효신의원, 김현백의원이 선출되었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질문

군정에 관한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김현백의원외 9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1. 금년도 상반기까지 군정홍보지 발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특보대 포함)은?	윤명희의원
	2. 제2회 칠갑산 장승축제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시상문제등)은?	이종섭의원
	3. 2000년도 및 내년도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이나 도·국회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예산확보 상황은?	김형직의원
	4. 군민 현장방문 및 주민평가제 운영실적과 평가 결과 군정에 반영된 유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의원
	5.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이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수범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6. 민원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실적과 조치상황을 설명해주기 바람.	우봉명의원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2000.7.7일자로 고시된 바 군에서 설치한 표지판이나 간행물에 대하여 재정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8. 청양군 이미지 통합계획(CIP)을 위한 추진실적 과 앞으로의 계획은	천우길의원
	9. 도림은천 대은천장 건립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은?	
	10. 민선자치 2기 군수공약사항을 각 분야별 추진 현황과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대책은?	유성종의원
	11. 2001년도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의 예산확보 대책은?(추진사업별)	
	12.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시·군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군의 대응전략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박상진의원
	13. 철갑산 맑은물 판매사업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 과 앞으로 판로망 확충을 위한 대책은?	박효신의원
종합민원실	1. 『세무민원상담의날』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이종섭의원
	2.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바 정확한 조사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봉명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종합민원실	3. 대민 친절자세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보는데 친절운동을 전개하면서 주민으로부터 격려나 찬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봉명의원
	4.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읍·면별 배정기준은?	천우길의원
	5. '98~2000년 8월 현재 지적 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 실적과 내용은?(읍·면·리별, 지목, 면적등 구체적으로)	유성종의원
	6. '98~2000년 8월 현재 도립공원지역 및 도시계획지역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상황은?	
자치행정과	1. 지방공무원 3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윤명희의원
	2. 공무원 공채자중 미발령자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은?	
	3. 금년도 8월 15일 현재 군수표창 내역은?	
	4.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에 있어서 각 읍·면별 오지마을의 객관적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김형직의원
	5. 지형의 변동에 따라 읍·면계 및 리계가 변동되어 각종 통계자료가 각 지형물과 맞지 않는데 경계를 조정할 용의는?	우봉명의원
	6. 제39회 군민체육대회 준비상황과 화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천우길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자치행정과	7. 21세기는 정보화 및 전문화 사회로 행정기관에서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각 부서별 전문직 배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성종의원
	8. 2000년도 생활민원사업중 읍·면별 신청내역과 지원내역 및 앞으로 생활민원사업비 상향 책정 계획은 없는지?	박상진의원
	9. 청양군 공설운동장 매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및 관리계획은?	
	10. 구조조정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양양 대책은?	박효신의원
재무과	1. 상반기 재무과 업무보고시 주민등록 공부자료와 주민세 대장의 일제정비를 7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추진결과는?	김형직의원
	2.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대책은?	박효신의원
환경보호과	1. 지하수 고갈에 대비하여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고 하였는바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및 해당지역 주민의 반응은?	김현백의원
	2. 2000년도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과 완공시기는?	
	3.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용역결과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대책과 지역주민의 반응은?	
	4. 효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 현황(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현황)과 지도단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김형직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환경보호과	5.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구체적인 확충방안과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김형직의원
	6. 읍·면별 폐품 수집 상황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은?	천우길의원
	7.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제 추진현황과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 및 대책은?	박상진의원
지역경제과	1. 구기자타운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김형직의원
	2. 금년도 상반기 현재 우리군의 실업자 현황 및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3. 청양 공영버스 노선별 경영수지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공영포함)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지원현황은?	유성종의원
	4.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기한내 완공할 수 있는지?	박상진의원
	5. 화성농공단지 주변 농업용수(소형관정) 및 생활용수 고갈에 대비한 앞으로의 대책은?	
	6. 각 농공단지별 미분양 현황과 앞으로 입주대책은?	박효신의원

### 3. 第3次 本會議

#### 가. 주요사업장답사의견

2000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촉구하며, 군민의 여론수렴등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으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군내 12개 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기로 의결하였다.

## 나. 휴회의견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휴회기로 하였다.

## 다.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제2차에 이어 군정에 관한 사회복지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계속되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사회복지과	1. 올바른 아동지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년 소녀가장세대 9세대 16명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과 가정 위탁 실시 현황은?	김형직의원
	2. 중증장애인을 위한 민원상담 호출제의 운영실적 과 수혜자들의 반응은?	우봉명의원
	3.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충·효·예 교실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보조금 집행내역은?	천우길의원
	4.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각종 노인복지정책은?	유성종의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 조사 읍·면별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박상진의원
	6.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준공계획(일정)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박효신의원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건설도시과	1. 학사촌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반응과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김현백의원
	2. 재해예방대책을 위하여 범람위험이 예상되는 하천제방등 긴급히 보수할 제방에 대한 현황과 일제 정비 계획은?	이종섭의원
	3.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은?	김형직의원
	4. 금년도 발주 시행한 각종 맨홀공사 추진현황과 공사 감독 사항은?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2000. 7. 7일자로 고시된바 군에서 설치한 표지판이나 간행물에 대하여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우봉명의원
	6.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관리 대책은?	천우길의원
	7.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고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마을 생활용수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확대 공급을 위하여 예산확보 대책은?	
	8. '98~2000년 8월 현재 도립공원지역 및 도시계획지역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상황은?	유성종의원
	9. 칠갑산 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바 표고자목 벌채 및 임산물 채취허가등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소나무(육송)의 육성으로 청양의 명산으로 가꾸어 다시찾는 칠갑산 관광이 될 수 있는 칠갑산개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10. 관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및 조치내역은?	박상진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보건의료원	1.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각 읍·면 보건지소에 독사 교상치료제를 비치할 용의는?	김형직의원
	2.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과 취약지 방역소독실시 상황은?	우봉명의원
	3. 읍·면 보건지소의 치과장비 보급에 따른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확보계획은?	천우길의원
	4. 최근 생태학적 변화로 세균성 이질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상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및 관내 전염병 환자 발생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답변 바람.	박상진의원
	5.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박효신의원

#### 4. 第4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제3차에 이어 군정에 관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림과	1. 금년도 칠갑산(장곡광장) 주차장 및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내역은?	윤명희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림과	2. 농림사업 지원사업중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융자금을 회수한 실적은?	윤명희의원
	3. 영농조합법인중 운영하지 않고 있는 법인내역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이종섭의원
	4. 밤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밤나무 고목갱신을 위한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이종섭의원
	5. 칠갑산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칠갑산 주변에 식재한 벚꽃이 개체별로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김형직의원
	6. 금년도 시행한 임도의 신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의 추진내역은?	우봉명의원
	7. 8월 10일부터 구제역, 돼지콜레라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1백만원이상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보도된바 이에따른 농가에 대한 홍보 방법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성종의원
	8. 칠갑산 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은바 표고자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허가등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소나무(육송)의 육성으로 청양의 명산으로 가꾸어 다시찾는 칠갑산 관광이 될 수 있는 칠갑산 개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박효신의원
	9. 농촌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경제성이 높은 소득작목을 추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업기술센터	1.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다수확 품종에 대한 연구 실적과 품종별 농가보급현황은?	김형직의원
	2. 농림부산하의 농업정보 119서비스의 초청으로 컴퓨터 활용방법과 농업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전 군민으로 홍보하여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은?	우봉명의원
	3. 현재 운영중인 각 작목반 구성현황 및 각 작목반별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은?	천우길의원
	4. 양질의 버섯 종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균배양소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박상진의원

## 第8節 第79回 臨時會

제79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박효신의원의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7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견

제79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7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10. 16 (월) 10:00	1	개 회 식	
		1. 제7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17~10.18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19(목)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	

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제출년월일 : 2000. 10. 12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이 변경 내시되어 증가되었고 수해피해의 조기복구와 추가발생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

○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1회추경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121,553,201	113,425,290	8,127,911	7.2%
일반회계	100,130,396	89,552,415	10,577,981	11.8%
특별회계	21,422,805	23,872,875	△2,450,070	△10.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0년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9인을 선임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김현백의원,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라.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회기로 하였다.

**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7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이 선출되었다.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견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종섭위원의 진행으로 김형직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견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이종섭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였다.

#### (4)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2차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있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5,805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2,117천원으로 한다.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관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121,553,201	-	-	121,553,201	-
일반회계	100,130,396	-	-	100,130,396	-
특별회계	21,422,805	-	-	21,422,805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121,553,201	166,312	166,312	121,553,201	0.14
일반회계	100,130,396	166,312	166,312	100,130,396	0.17
특별회계	21,422,805	-	-	21,422,805	

○ 삭감액 조서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관	장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이유와 내 역
	항	세항		감 액	증 액		
합 계				166,312			
일 반 행정비	기획관리	자치행정 관 리	3,001,215	4,000		2,997,215	-외빈초청홍보물 제작
		정보통신 관 리	745,614	71,000		674,614	-일반전화요금 -방화벽프로그램 도입 -방화벽구축서버 구입
		사회진흥	346,898	20,000		326,898	-자원봉사요원유니폼 구입 -자원봉사요원물품 구입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센터물품 구입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 관리	체육진흥	736,725	15,162		721,563	-문화체육센타계단 보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환경관리	환경정화	3,224,5178	11,250		3,233,268	-쓰레기종량제 관련 물품구입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98,7,965	900		986,696	-마을하수도오수 정화조전기요금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	산림자원 개발	조림관리	2,323,002	44,000		2,279,002	-새천년나무심기 꽃나무생산보급

### 3. 第2次 本會議

#### 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회부일 : 2000. 10. 16                      ○ 심사보고일 : 2000. 10. 19
- 처리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직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0월 1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第9節 第80回 臨時會

제80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김현백의원과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8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0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8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11. 8 (수) 10:00	1	개 회 식	
		1. 제8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주요사업장답사)	
11. 9~11.11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11. 12(일)		일 요 일	공휴일
11. 13(월)	2	1. 조례안및일반안전처리	



##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481명”을 “484명”으로 하고 제2호중 총계 “481명”을 “484명”으로 한다.

###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1] 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표2] 를 각각 적용한다.

『표1』 청양군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50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49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표2』 청양군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50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49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집행기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집행기관의 정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순증되는 보강정원(3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④(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 나. 청양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청양군공설묘지등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법 무단장식의 예방으로 매장용지확보와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1월 1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공설묘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묘지 등"이라 함은 공설묘지, 납골당, 납골묘지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청양군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납골당"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4.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망한자로서 공설묘지나 납골당에 안장 또는 안치될 자를 말한다.
6. "사용계약자"라 함은 사용자를 안장 또는 안치하기 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중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묘지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분묘의 면적) ①분묘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면적은 $10\text{m}^2$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text{m}^2$ 를 초과할 수 없다.

②합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묘의 형태등) ①분묘는 봉분으로 하며 묘비는 와비형으로 하고 석물 등 기타시설물은 군수가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묘지의 앞에는 반드시 사용자와 가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묘비를 세워야 하며, 그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묘지내의 부대시설) ①묘지 내에는 묘지 등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구 및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체운반기구
2.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

②제1항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나 납골당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청양군일 때
2.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연유골
3.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안치하려는 유골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제8조(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묘지 안에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2.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3. 묘지 내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제9조(사전매매 등의 금지)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금지한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묘지등의 사용) ①묘지의 사용과 납골당의 유골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②묘지 등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시체운반기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묘지 등의 사용기간) ①묘지 등의 사용계약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묘지 등의 사용계약자는 별표2에 정한 사용료와 최초관리비 등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11조제1항에 의한 연장 계약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②제1항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①묘지 등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②제1항의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사항은 제8조의 계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개장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안장대상자 사망 후 사용허가를 받은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을 때
4.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1년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
5.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군수는 묘지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금지행위) ①묘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장된 유해나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시설물을 임의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지 내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지 내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
6. 일몰 후 참배하는 경우
7. 고성방가나 난동행위

②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묘지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참배와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묘지 내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공중위생에 기여한다.
2. 묘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조경·휴식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묘적부) 군수는 묘지사용 계약자와 안장 또는 안치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와 납골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인) 공설묘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공설묘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관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공설묘지 등의 조성과 관리 업무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 ①묘지 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4조(수익금사용) 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묘지 등의 확장 및 관리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료감면특례)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 발생하여 묘지에 재안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연유골·무연유골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유연유골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묘석 대금 및 기타 경비는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1월 1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영세민”을 “수급자”로 한다.

제1조중 “영세서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3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8조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정·운영하던 청양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제정된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운영하고자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1월 1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제4조제3항중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10節 第81回 第2次定例會

제81회 청양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청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81회 청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81회 제2차정례회의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 운영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81회 청양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2일(토) 10:00	본회의	1	<p style="text-align: center;">개 회 식</p> 1. 제81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감사특위	1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월 3일(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 4일(월)	본회의	2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2월 5일(화)	"	3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12월 6일(수)	"	4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 조례안및일반안건 3. 휴회의건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 7일(목)	감사특위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 모덕서관리사무소, 자치행정과)	군수인사
12월 8일(금)	"	3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12월 9일(토)	"	4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12월10일( 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11일( 월)	감사특위	5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농림과, 지역경제과)	
12월12일( 화)	"	6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2월13일( 수)	"	6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읍·면)	
12월14일( 목)	본회의	5	1. 2001년도예산안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정연설 4.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조례안및일반안건 7. 휴회의건	군수
	예결특위	1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2001년도예산안 5.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15일(금)	예결특위	2	1. 2001년도예산안	
12월16일(토)	"	3	1. 2001년도예산안	
12월17일(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18일(월)	예결특위	4	1. 2001년도예산안	
12월19일(화)	"	5	1. 2001년도예산안	
12월20일(수)	"	6	1. 2001년도예산안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	
12월21일(목)	본회의	6	1. 2001년도예산안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조례안및일반안건 6. 휴회의건	
	예결특위	7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월22일(금)	예결특위	8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월23일(토)	본회의	7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감사특위	8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2월24일(일)			공 휴 일	일요일

월 일	구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25일(월)			공 휴 일	성탄절
12월26일(화)	본회의	8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조례안및일반안건	

#### 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운영기로 의결하였다.

#### 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9인을 선임하였다.

#### ◆ 선 임 위 원 명 단 ◆

김현백의원,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중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 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감사특위에서 채택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 11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다.

#### 마.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각 담당을 출석요구 하였다.

#### 바.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우길의원, 박상진의원이 선출되었다.

## 2.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인 이종섭위원의 진행으로 윤명희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천우길위원이 추천되어 선임되었다.

####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감사특위 심사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기로 하였다.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사기간

2000년 12월 7일 ~ 12월 13일(7일간) <기간중 6일 실시>

◇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군본청(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 군본청(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 감사반 편성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간 사	감사위원	보 조 직 원
· 청양군(실·과) · 사업소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읍·면	윤 명 희	천 우 길	김 현 백 이 중 섭 김 형 직 우 봉 명 유 성 중 박 상 진 박 효 신	- 사무과장 : 김기호 - 전문위원 : 강익재 - 의사계장 : 곽병훈 - 의 사 계 : 오호섭 박정선 - 속 기 사 : 1명

※ 감사반은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함.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2000. 12. 7(목) 10:00	기획감사실, 모덕사관리사무소, 자치행정과	특별위원회실
2000. 12. 8(금) 10:00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
1998. 12. 9(토) 10:00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
1998. 12. 11(월) 10:00	농림과, 지역경제과	”
1998. 12. 12(화) 10:00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
1998. 12. 13(수) 10:00	읍·면 현지확인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대 상 기 관	감 사 방 법	중요감사사항	비 고
· 군 청 (실·과) · 사업소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감사자료 보고 청취 - 자료분석과 질의 -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현지확인검증	감사자료요구 사항 (별첨)	- 관계인 출석 요구 -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및 실·과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관계 공무원과 필요시 일반주민)

◇ 소요경비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등은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의장경유 피감사기관에 요구함.
-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음
-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
- 감사자료요구
  - 제출기한 : 2000. 12. 5. 12:00
  - 작성기준 : 2000. 1. 1~ 현재
  - 규 격 : A4 좌철
  - 제출부수 : 25부
  - 제출서식 : 임의서식(단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항별로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 첨부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사본 별첨)
- 첨 부 : 감사자료요구사항(생략)

(4)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실·과,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과 전 담당을 출석요구키로 하였다.

### 3. 第2次 本會議

#### 가.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 4. 第3次 本會議

#### 가.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2차에 이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다.

### 5. 第4次 本會議

#### 가. 2000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3차에 이어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쳤다.

#### 나. 휴회의견

행정사무감사실시 관계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기로 하였다.

## 6.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가.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2월 13일까지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하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나.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라.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농림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바.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6차에 이어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 7. 第5次 本會議

#### 가. 2001년도예산안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원영 청양군수의 군정연설이 있었다.

#### 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제출년월일 : 2000. 11. 2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 2001년도 기금의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3,266,657	3,431,016	△ 164,359	
애향장학회기금	311,000	311,000	0	
지방채상환기금	2,576,000	2,576,00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15,424	115,424	0	
사회복지기금	54,600	54,600	0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0	164,359	△ 164,359	
재해대책기금	182,104	182,104	0	
재난관리기금	27,529	27,529	0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고 1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김현백의원,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 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라.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견**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 마. 농가부채특별법제정에 따른건의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12                      ○ 제 출 자 : 유성종의원의외 9인

○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이 농축산물의 가격폭락등으로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바, 최근 정부에서 도탄에 빠져가는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므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군의회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으므로 충정어린 심정으로 농민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대통령께 건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가부채특별법제정에 따른건의안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 시상식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벅찬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으며 이러한 환희는 비단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느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수상소감에서 밝히신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노벨평화상은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전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사회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바 있듯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저희 의원 일동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단시일에 IMF체제에서 벗어났던 우리경제가 재벌·금융·노사·공공부문등 4대 개혁의 미완결로 지금 또다시 위기로 치닫으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작금의 거시적 경제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고, 각종 매스컴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한파는 IMF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한 상태이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온 국민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던 IMF체제를 극복해야겠다는 굳은 신념과 용기가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세계인이 부러워했던 금모으기 행사등 나라경제살리기에 혼연일체가 되어있었지만 지금의 얼굴에는 그러한 희망의 빛이 사라져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대통령께서도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하셨듯이 바로 4대 개혁완수인데도 각계각층의 제몫 챙기기등 반개혁 세력의 줄기찬 저항에 부딪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몇 명의 정책입안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울때에 대통령님의 고뇌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건의서를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의 농촌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고 비참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굽어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양군은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479.6km<sup>2</sup>의 면적에 42,000여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도내에서 가장 작은 군으로서 농업이 63%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식량작물과 축산이 주수입원이므로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그 피해는 그 어느지역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종 매스컴에서 절규에 가까운 오늘날 농촌경제의 현실은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차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세계 교역량의 10위안에 드는 국가경제에서 농촌 경제의 비중이 차지하는 정도가 미미하고 남·북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은 바로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결코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원화의 사회에서 지금까지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로간에 마찰이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농민들이 국가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작금의 농촌 현실이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것을 반증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도탄에 빠져가는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만시지탄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자위해 봅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을 그들과 함께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군의원들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어 충정어린 심정으로 그들의 요구를 건의하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모든 정책자금은 5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금리는 3%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2. 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부채도 5년거치 10년간 분할상환으로 하되 금리는 농업수익률인 5%로 적용하여 주십시오.
3. 연대보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하고 이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보증 또는 생산물 담보제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4. 특별법 제정 이전에 연체된 이자는 전액 탕감하고 의료보험료 정부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십시오.
5. 지난번 농민시위로 구속된자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군에서도 농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촉망을 받던 한 젊은이(김영래, 34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늙은 노모와 어린 두 자식을 남겨둔채 영어의 몸이되어 이 추운 겨울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00. 12. 14

청양군의회의원일동

## 바. 휴회의건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기로 하였다.

## 8.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종섭위원의 진행으로 박상진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이종섭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였다.



**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1년도예산안(계속)**

제3차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1년도예산안(계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1년도예산안(계속)**

제5차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2) 2001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제6차 예결특위까지 심사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5,658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41,957천원으로 한다.

◇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산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118,218,106	-	-	118,218,106	-
일반회계	104,692,533	-	-	104,692,533	-
특별회계	13,525,573	-	-	13,525,573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산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118,218,106	218,299	218,299	118,218,106	0.18
일반회계	104,692,533	196,299	196,299	104,692,533	0.19
특별회계	13,525,573	22,000	22,000	13,525,573	0.16

○ 세입예산안(총괄)

(단위:천원)

구 분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정 후 예산액
		감 액	증 액	
계	118,218,106			118,218,106
일 반 회 계	104,692,533			104,692,533
지 방 세	4,572,380			4,572,380
세 외 수 입	7,615,022			7,615,022
경상적세외수입	2,316,598			2,316,598
임시적세외수입	5,298,424			5,298,424
지 방 교 부 세	39,700,000			39,700,000
지 방 양 여 금	10,683,650			10,683,650
재 정 보 조 금	41,121,481			41,121,481
국 고 보 조 금	21,692,476			21,692,476
도 비 보 조 금	19,429,005			19,429,005
지 방 채	0			0
국 내 차 입 금	0			0
특 별 회 계	13,525,573			13,525,573
지 방 세	0			0
세 외 수 입	10,375,573			10,375,573
경상적세외수입	4,872,168			4,872,168
임시적세외수입	5,503,405			5,503,405
지 방 교 부 세	0			0
보 조 금	3,150,000			3,150,000
국 고 보 조 금	2,800,000			2,800,000
도 비 보 조 금	350,000			350,000
지 방 재 원	0			0

○ 세출예산안(총괄)

(단위:천원)

장 별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예산액
		감액	증액	
계	118,218,106	218,299	218,299	118,218,106
일  반  회  계	104,692,533	196,299	196,299	104,692,533
일  반  행  정  비	23,453,582	74,119		23,379,463
사  회  개  발  비	34,657,771	32,000		34,625,771
경  제  개  발  비	44,527,819	90,180		44,437,639
민  방  위  비	570,133			570,133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483,228		196,299	1,679,527
특  별  회  계	13,525,573	22,000	22,000	13,525,573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36,565			836,565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70,225			170,225
의  료  보  호  기  금  관  리  특  별  회  계	3,503,200			3,503,200
새  마  을  소  득  사  업  특  별  회  계	304,185			304,185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70,447			170,447
농  공  단  지  조  성  특  별  회  계	3,847,279			3,847,279
골  재  채  취  특  별  회  계	2,722,717			2,722,717
지  역  발  전  기  금  특  별  회  계	1,203,543			1,203,543
주  차  장  사  업  특  별  회  계	156,000			156,000
먹  는  쌈  물  사  업  특  별  회  계	611,412	22,000	22,000	611,412

○ 삭감액 조서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196,299			
일반행정비				74,119			
입법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1,649	1,649		0	의장·부의장실 환경정비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2,970	2,970		0	의회홍보광고료
			80,000	30,000	50,000	청양군종합계획 수립용역	
	20,000	20,000	0	청양홍보활동지원			
	900	900	0	청사계양용 깃발			
	600	600	0	군기 및 조기제작			
	2,000	2,000	0	야외행사용 이동식 앰프			
	자치행정	사무통계 관 리	36,000	16,000	20,000	무인증명발급기 도입	
사회개발비				32000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 관 리	체육진흥	2000	2000		0	군수기불링대회
			60,000	30,000	30,000	문화체육센터 및 청양·화성어린이집 문화시설확충	
경제개발비				90,180			
농수산 개발	농정관리	농정관리	20,180	20,180		0	삼림육장 조성사업
			138,992	70,000	68,992	철갑산 환경림 식재	

· 특별회계(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22,000			
사회개발비				22,000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개발	먹는샘물 공장운영	22,000	22,000		0	먹는샘물사업 경영진단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다.

9. 第6次 本會議

가. 2001년도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2000. 12. 14.      ○ 심사보고일 : 2000. 12. 21

○ 처리결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상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예결특위 회부일 : 2000. 12. 14.
- 심사보고일 : 2000. 12. 21

- 처리결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상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연월일 : 2000. 12. 2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하여야 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제3회추경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119,083,198	121,553,201	△2,470,003	△2.0%
일 반 회 계	98,798,967	100,130,396	△1,331,429	△1.3%
특 별 회 계	20,284,231	21,422,805	△1,138,574	△5.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라.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제출연월일 : 2000. 12. 1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 200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064,429	557,505	506,324	90.9%
애향장학회기금	257,959	257,959	0	
지방채상환기금	500,000	0	500,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27,354	120,430	6,924	
사회복지기금	21,600	21,600	0	
재해대책기금	140,318	140,318	0	
재난관리기금	17,198	17,198	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0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마. 휴회의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휴회기로 하였다.

## 10.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 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7차에 이어 계속해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에 이어 계수조정이 있었다.

#### (2)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의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200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8,641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0,911천원으로 한다.

◇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119,083,198	-	-	119,083,198	-
일반회계	98,798,967	-	-	98,798,967	-
특별회계	20,284,231	-	-	20,284,231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119,083,198	2,270	2,270	119,083,198	
일반회계	98,798,967	2,270	2,270	98,798,967	
특별회계	20,284,231	-	-	20,284,231	

○ 삭감액 조서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2,270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 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770	770		0	마을하수도정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청소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비	산림자원 관리	산림관리 (재료비)	1,500	1,500		0	휴양림 자연석 시비

(4)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200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11. 第7次 本會議

### 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2000. 12. 21.      ○ 심사보고일 : 2000. 12. 23.
- 처리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상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나.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결특위 회부일 : 2000. 12. 21.    ○ 심사보고일 : 2000. 12. 23.
- 처리결과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상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12.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가.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견**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으며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1. 1억원이상 각종 사업 중 국·도비보조금등 부담내역(양여금,보조금,특별교부세로 구분)(’98~2000)	· 국·도·군비부담 비율에 있어 형평성등 문제점이 많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군비부담율이 높아 경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니 앞으로 정책적 건의 당부.	
	2. 지방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2000년 1월 말 현재)	· 지방채 채무부담상환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되 불용재산매각, 지방채신규발행억제, 각종 행사등 낭비성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조기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당부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3.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공무원 징계현황('98~2000)	· 2년동안 1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제반법규연찬 미숙 및 품위유지 위반 사항으로 앞으로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 강구 당부	
	4.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성과금제도 및 인센티브 활용방안	·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참여방안 강구 당부	
	5. 군민대상시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제1회~제9회)	· 군민대상수상자가 없는것도 군민의 수치이며 군민대상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시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며 공적내용의 변동이 없이 계속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지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당부	
	6. 2000년도 공무원 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 및 성과	·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난국을 타개하여야 함 · 앞으로 공무원사회가 동요없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함.	
	7. 먹는샘물 제조사업 판매사업 운영현황 (2000. 11월 현재)	· 칠갑산 맑은물 판매가 지속적인 홍보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청양군 관내에서도 칠갑산 맑은물을 이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으니 독려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8. 2000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군정현황(개최일, 부의안전 심의결과)	·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실·과장 위주로 편성되어 조례·규칙 개정 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당부	
	9.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의 노력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실적과 사업추진 내역	·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형편으로 볼 때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중앙 및 도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현안사업 등 추진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1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식수전용댐 건설, 광역위생매립장 건설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당부	
	11. 21세기 청양군 장기발전계획용역 추진현황 및 주요발전전략 내용	· 청양군 장기발전계획은 청양의 미래를 미리볼 수 있는 청사진임. 지역주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모덕사 관리사무소	1. 모덕사 정·현원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건비포함, '98~2000)	·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1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2명이 근무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2. 모덕사에 소장된 각종 유물현황 및 보관관리 상황	· 보안경보시스템 작동상태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 각종 유물등을 철저히 보관 관리바람.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종합민원실	1. 불허민원 현황 ('98~2000)	· 불허가 반려민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민원공무원의 수동적인 업무처리에 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인 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자세전환 이 필요함.	
	2.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99~2000)	· 과태료부과·징수의 목적이 아닌만 큼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계도등 조치당부	
	3.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현황	· 건축물 수(재산세 과세대상상)와 등재현황과 차이가 있음. 건물현 황도 등 첨부 민원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없이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기 바라며, 모든 건축물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민원후견인제 이용실적 및 후견인 지정현황	· 좋은 시책인 만큼 시책으로 끝내지 말고 군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당부	
	5. 행정착오 실비 보상 실적과 유형별 내역	· 행정착오에 의한 실비보상도 중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고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중 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함.	
	6. 농촌주거환경개산사업 추진현황 및 확정된 주택개량 대상자 중 미개량자 내역과 현재까지 미추진사유 및 향후 대책	· 현재 사업추진중인 것은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당부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종합민원실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 한번 부여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바꾸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적 전통성을 살려 이미지에 맞게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	
	8. FAX채택 전자민원 운영실적	· 처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다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1. 해외교류협력(중국 등 탐시) 추진실적('98~2000)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 해외교류협력을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익이 있어야 하는 만큼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 등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당부	
	2.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연도별 구입내역('98~2000)	· 보유장비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제가 필요하며 부족한 장비에 대한 확보대책 강구 당부	
	3. 군내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그동안 지원현황과 2000년도 관리실태	· 청양읍 게이트볼장 지붕 안전성 검토를 요망하며 신규 설치시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천강아파트앞 둔치에 게이트볼장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4. 1, 2차 구조조정후 지적되는 문제점 및 3차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고려되는 적용기준(기구개편, 기능재조정, 인원감축, 민간이전실적)	· 타시·군과 비교한 결과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많음. 앞으로 구조조정등에 참고하여 적정하게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자치행정과	5. 의용소방대원 긴급출동시 사고현황 및 사후처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구급차 배치운영에 따른 운전기사, 간호사 등이 조석 배치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의용소방대 사기양양 대책을 강구바람.</li> <li>· 대치면 부너소방대 지원문제를 道 등에 건의조치 당부</li> </ul>	
	6. '99, 2000년도 일·숙직비 지급현황과 군본청 및 산하기관 보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소요예산, 용역회사, 월용역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벽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방호 경보시스템 보완 설치 당부</li> </ul>	
재무과	1.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불 등 조치내역('99~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과오납이 전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 지적 및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당부</li> </ul>	
	2.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 및 징수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명단공개가 가능한지 검토당부</li> </ul>	
	3. 공공시설(건축물) 등기필 현황(본청, 사업소, 읍·면관리 건축물 준공일, 등기필일) 및 미등기건물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 건축물의 완공후 등기가 지연된 이유 및 각실·과 부서별 각종 건축물 일제조사하여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li> </ul>	
사회복지과	1. 총령사건립에 따른 건축물 주요설계내용(사본첨부) 및 위폐봉인 안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령사 건립에 따른 전기시설이 누락된 이유와 앞으로 조석한 시일내 전기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당부</li> </ul>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사회복지과	2.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융자금 회수실적	· 상환기간 경과 미회수금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촉구	
	3.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과 지원상 문제점	· 고유가 시대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이 적은만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및 심야전기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방법 모색 당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최초 선정시보다 줄어든 이유와 군비부담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道등에 건의 당부	
	5.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실적 및 회수현황('98~2000)	· 의료보호 대불금제도는 매우 좋은 시책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99년도에 1건도 없었음을 지적함.	
	6. '99~2000년도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읍·면별, 월별인원 및 지급액)	· 노인교통수당 현금지급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앞으로 승차권 발매제도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당부	
	환경보호과	1.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현장과 문제점 및 지역주민과의 약속 사항 이행실적	·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이 진행중인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료후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당부
2. 금년도 읍·면에 비위생매립장(정산, 목, 청남)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정산소재지 간이상수도 철거공사 및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지연사유등 작성)		· 군단위 광역위생매립장설치 추진을 중단한 이유와 정산면 재활용창고 및 캔압축기 관리실태 미흡함 지적 · 청양읍 위생매립장 정비계획 용역 결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당부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환경보호과	3. 군내 간이상수도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소득설비 설치내역	·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등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해당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당부	
	4.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	· 공해배출업소 사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실태 철저히 점검 당부	
위생환경사업소	1. 분뇨처리 현황('98~2000)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정화사에 대한 대 주민홍보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농 립 과	1. 폐농기계 수집실적('98~2000)	· 폐농기계를 처리하지 않고 부품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폐농기계 수거가 미흡함. · 버려진 폐농기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폐농기계 수집상 지원금 회수조치 할 수 있는지 검토당부.	
	2.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농지매매 확인을 발급해 주지 않도록 개선 요망하고, 사후관리 철저 당부	
	3. 청양고추의 명품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실적과 홍보비 집행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	· 청양고추가 향토 지적재산에서 제외된 이유와 고추축제시 버스임차료 과다지급 문제점 지적 · 고추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시 의회에 설명 당부.	
	4. 금년도 임대시설 신설·보수현황	· 임대구조개량공사 도급계약시 주의계약 문제점 지적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농 립 과	5. 육림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99~2000)	· 무육간벌 시행시 도로에서 보이는 곳만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당부.	
	6. 산불발생현황 및 실화자에 대한 조치내역('98~2000)	· 산불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지역경제과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99~2000)	·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 저조하므로 철저한 징수 대책을 수립 강구 당부. ·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책강구 당부.	
	2. 정산시장 가스 사용실태 및 향후 조치계획	· 정산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점상인에 대한 대책강구 미흡함 지적	
	3. 각 농공단지별 기업체의 가동 및 휴·폐업 현황 및 조치계획	· 화성, 비봉농공단지 분양대금이 71억원인데 현재 28억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채권관리에 문제점 지적	
건설도시과	1. 하천점용허가 현황 및 미점용허가 사용자 내역 및 조치사항('99~2000)	· 하천점용(논)허가시 실경작자가 아닌 관외거주자가 점용하여 실경작자가 대리경작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조치 당부.	
보건의료원	1. 신축보건의료원 시설 현황 및 이전계획과 장비보강계획	· 신축보건의료원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장비 및 집기준비등 이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당부	
	2. 임상연구비 지급내역 및 연구과제	· 임상연구 논문집 작성시 청양군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토록 개선 당부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보건의료원	3. 의약분업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이행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관내 의·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며, 특히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등 당부.	
농업기술센터	1.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성과	· 농작업 피로회복실에 대한 주민의 활용실적이 저조함.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 당부	
	2. 농기계순회수리실적 및 군비부담 부담구입 현황과 활용실적	· 연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기 바라며, 부득이 계획된대로 시행을 못할 경우 사전 안내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당부.	
읍·면	1. 읍·면별 특수시책 추진현황	· 읍·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시책개발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당부	
	2. 지방세 체납액 현황 (세목별 구분작성) 및 징수대책	·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가 요구됨.	
	3. 휴경농지현황과 휴경지에 대한 경작 및 활용방안과 향후대책	· 휴경농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 강구 추진바람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공 통	1. 명시·사고이월사업중 미준공 사업 내역과 사유	· 청양읍 소방청사가 국도 29호선 도로면보다 낮게 시공된바 이는 안 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공공건물 건축시 면밀한 설계 검토 당부	자 치 행정과
		·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업 기술 센터
	2. 각종 축제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 추진 성과	· 장승축제는 고추축제등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	기 획 감사실

◇ 시정 및 요구사항

실·과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기획감사실	1. 1억원이상 각종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도·군비 재원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이 높은 사업 및 시책
	2.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지방채무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채무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규 지방채발생을 억제, 불용재산매각 및 낭비성 행사등을 자제하여 지방채무가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군민대상의 권위를 살리기 위하여 책임자가 시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특히 공적내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진되는 사례가 지양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등 보완 바람.
	4.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과장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조례, 규칙등을 개정하여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실·과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기획감사실	5. 1억원이상 각종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도·군비 재원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이 높은 사업 및 시책
종합민원실	<p>1. 불허가 민원 반려사항중 일부 민원중에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부족으로 기인한바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p> <p>2. 재산세 과세대상상 건축물수와 건축물대상상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있는 만큼 모든 건축물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p>
자치행정과	<p>1. 형식적인 국제협력교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교류시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p> <p>2. 민방위장비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관 관리하는 만큼 상시 점검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부족한 장비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조치바람.</p> <p>3. 청양읍 게이트볼장의 지붕에 대하여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문가를 위촉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향후 각종 체육시설 설치시 주민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천강아파트 앞 둔치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바람.</p> <p>4. 119 구급차 배치 운영에 따른 운전기사 및 간호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소방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대치면 부녀소방대에도 출동수당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道등에 정책적인 건의 바람.</p>
재 무 과	1.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시행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기 바람.

실·과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재 무 과	2. 공공건물(건축물) 등기필 현황에 있어 건물완공 후 등기가 지연된 사례가 있음. 향후 각 실·과 부서별 각종 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모든 건축물이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사회복지과	<p>1. 충령사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및 주변정화작업으로 깨끗한 환경 유지 바람.</p> <p>2. 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를 촉구하기 바람. 회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3.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난방지 지원에서 고유가시대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심야전기보일러등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수립 시행바람.</p>
환경보호과	<p>1. 현 위생매립장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밀 분석하여 중복투자가 없도록 하고 청양읍 위생매립장 정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의회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p> <p>2. 공해배출업소등을 사전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개선명령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p>
농 립 과	<p>1. 버려진 폐농기계 현황을 파악하여 폐농기계가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농기계 수집상에 지원된 금액의 회수 검토·조치바람.</p> <p>2. 청양고추축제시 소요경비가 무모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시 의회에 사전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p> <p>3. 산불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 추진 바람.</p>

실·과별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지역경제과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세부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화성,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미회수 분양대금이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업체별 명확한 채권관리대책 수립 시행 바람.
건설도시과	1. 하천점용(답)허가시 실경작자가 아닌 관외거주자가 점용하여 실경작자가 대리경작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보건의료원	1. 임상연구에 대한 논문집 발간시 청양군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과제 선정 연구토록 조치바람.
	2.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약국의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품의 품질로 치료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1. 농작업 피로회복실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있어 연초에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하되 부득이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 통보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읍·면	1.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세심하게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2.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철저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통	1. 장승축제를 고추축제등 타 축제와 병행하여 개최,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시행바람.

### 13. 第8次 本會議

#### 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윤명희 위원장이 보고하였다.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감사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2000년 12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나.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한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건축높이 및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영세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5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7조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을 삭제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을 삭제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6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 100퍼센트

제52조제3항 제1호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를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로 한다.

제52조제3항 제2호가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4미터이상

제10장의 제목 “도시설계 등”을 “공개공지 등”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영 제121조제1항제5호 및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한 건축물
3.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③영 제121조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법 제8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제8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별표2 내지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제66조제4항에 해당하여 이미 3호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라.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양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1호가목중 “2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제2항제3호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하며,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제37조제1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분기(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 - (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

제38조제1항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으로 하고 ,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32”를 “1,000/115”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조 제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3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중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7조 제목을 “농지의 변동신고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본문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각각 변경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중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본문중 “농지조사위원회의”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한다.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 제1호가목 본문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본문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468호 부칙 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제1호의 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바.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청양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통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통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거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3을 적용한다.

###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1(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2(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운곡 농공단지
2. 정산 농공단지
3. 화성 농공단지
4. 비봉 농공단지
5. 학당 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군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3.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제7장 보 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저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양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제출년월일 : 2000. 12. 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군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대부(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단위:m<sup>3</sup>, 천원)

구 분	수 량	면 적	평가액	비 고
계	토지 12필지 건물 1동	토지 4,466 건물 52.27	32,398 2,929	
구.농민상담소 숙소	토지 1필지 건물 1동	185 55.27	1,583 2,929	청남
구.시 장 부 지	토지 2필지	617	9,016	남양
보 존 부 적 합	토지 9필지	3,664	21,799	청양,정산,청남 장평,남양,화성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아.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2000. 12. 22.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미분양 농공단지의 분양(기업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농공단지 분양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2000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분양포상금) 군수는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5조제2항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